

지방계약법령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최 두 선



지방계약법이 탄생한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섰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보완을 거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예산에 한계는 있고 업체수는 매년 증가하다보니 수주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계약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호부터는 지방계약법령을 조문별로 그 의미와 입법배경, 취지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 유권해석사례, 실무사례 등을 정리함으로서 일선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계약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 실무 강좌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관조문별로 한꺼번에 정리하고 해설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그 표기방법은 조문 앞에 법은 (법)으로, 시행령은 (시)로, 규칙은 (규)로 표기하기로 한다.

(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연간 계약은 14만 여건에 15조원의 규모로 국가전체 공공발주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가 2005년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06. 1. 2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계약법 탄생의 근본적인 배경은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아래와 같은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1995년도 민선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량을 결집시켜 나름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반면에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계약의 집행에서 수의계약의 투명성문제, 입찰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어 왔었다.

둘째, 그동안 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2004년당시 100억 원이상 PQ 대상공사, 물품구매는 5천만원이상)의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무적으로 의뢰하

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2004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 졌고 합의내용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에 반영됨에 따라 지방계약의 전문성 향상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이 2006년도에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으며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정 내용중에 국가계약제도와 차별화된 주요 골자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개산계약(概算契約)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정산하여 대가지급을 하는 계약형태를 말하며 그동안 용역이나 물품에 동 제도가 도입·운영되어 왔으나 지방계약법제정을 통하여 공사는 최초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의 개산계약절차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며 이 경우 정산기준·절차는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해야 하며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율을 곱하여 정산하고 나머지 공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②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의 보수·복구공사 등 매년 반복적으로 예측없이 발생하는 보수·복구공사가 발생되고 있으며 보수·복구 사유 발생시마다 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수·복구를 하면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신속성·투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간단가계약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보수·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초에 경쟁입찰을 통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와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자인 통·리장이 추천하는 국가 기술자격소지자, 감리업무종사 경험자 등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가 시공과정을 감독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대상공사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로 한정하였으며 감독자의 자격을 관련 전문가로 제한하는 한편, 감독자에 대한 실비변상이 가능토록 했다.

④ 조형물 등의 제작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근거 마련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조형물이 제작되고 있으나 적정한 계약방법이 없어 애로를 겪어 왔으며 지방계약법에 디자인(설계) + 제작(제조) + 시공에 해당되는 복합형태의 계약을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였다.

⑤ 수의계약의 절차 투명화 및 공개의무화

수의계약대상이라 하더라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되는 공사(설계용역은 1천만원 초과)에 대하여는 3~5일간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후 심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자견적을 적정하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자치단체와 신용불량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토록 함으로써 시공·납품의 품질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전자견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등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내역을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토록 함으로써 더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시비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수의계약금지

현행 지방자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친·인척 등을 통한 명의변경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에 입법취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 단체장, 지방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 계열회사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을 통한 지방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⑦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연간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군·구가 개별적인 입찰 없이 신속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한 다량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절감, 품질의 고 급화, 다양한 품종의 구매선택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⑧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무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의 방법, 낙찰자의 결정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시·군·구는 5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물품·용역(시군구는 10억이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제재, 학술연구용역의수의계약 등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계약의 전문성이 보완되고 투명성을 확대토록 하였다.

⑨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건설공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종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만 시공에 참여토록 하여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제공사비의 감소로 인한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공동도급 운용요령을 제정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도입 하였으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원·하도급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다단계 하도급, 부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강재 등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에 한 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⑩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은 시·도의 국제입찰대상(공사 222억원, 물품용역 3억원 이상)에만 한정 되었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 사실상 분쟁이 많은 시·군·구의 경쟁 입찰에 대한 분쟁조정기능이 없어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기존의 국제입찰대상에서 국내입찰 대상까지 확대하였다.

⑪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처리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게 자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게 된다.

동 제도의 도입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주고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사무처리의 고도화를 실현시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⑫ 자치단체가 민간 계약 사무를 대행

앞에서는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반대로 자치단체가 민간 계약사무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하더라도 교부를 받은 민간단체 등이 계약사무를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행의 범위는 입찰·계약·감독·검사·하자보수 등 일련의 과정 모두가 가능토록하고 있다.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지방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기관에서도 제도적으로 준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므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계약법을 기본적으로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한 기관들의 경우에도 내부 회계규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

(법)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國際入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본다.

법 제2조는 동법이 적용되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하며 물론 이와 관련된 사업소 및 읍면동 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지방재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5조)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45조)에서는 다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로 별도로 정한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 제3조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예시: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협의)하거나 보고(시행령 제125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공립학교에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협의 또는 보고하면 될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와 시행규칙(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을 기본적으로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한 기관들의 경우에도 내부 회계규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2007년도 11월에 있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질의제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문서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1490(2007. 8. 9.)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사업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요물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준공통지서에 준공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요청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된 계약사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례 07-0157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수입 및 지출”이라는 표현은 세입 및 세출이라는 의미보다 그 범위가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입 및 지출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관련되는 재정지출 또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우이나 수입 및 지출은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대물변제 등 예산외 지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시)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규)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의 추정가격과 규칙 제2조에서의 추정금액은 상호 연관되는 금액의 기준으로서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서 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 예정금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의 추정금액과 그 의미가

사상 동일한 개념으로서 현재는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으며 추정금액으로 그 의미가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추정가격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추정가격은 입찰이나 계약을 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나 규격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재료비와 부가세를 제외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수의계약여부, 내역 입찰여부, 국제입찰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추정가격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

구 분	입찰방법 등 구분	관 련 규 정
1. 국제입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 - 공사 : 222억원 이상 - 물품·용역 : 3억원 이상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찰대상기관에서 제외됨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행정 안전부장관 고시 (2006.12.29 관보)
2. 공사의 현장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원이상인 현장설명의 경우 참가가 의무이며,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3일전에 실시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15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대상 - 공사 : 100억원이상 - 물품·용역 : 3 억원이상 	- 지방계약법시행령 §15①, §16 ①
4. 내역입찰, 총액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내역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시행령 §15⑥
5. P.Q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 : 200억원 이상 공사중 18개공종, 300억원 이상은 모든공사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23
6. 수의계약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이하 ○ 물품·용역 : 5천만원이하 	- 지방계약법시행령 §25① 제5호
7. 낙찰자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 낙찰제 : 2억원미만 물품, 300억원 이상공사 ○ 의무적 적격심사 대상 - 공사 :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초과) - 용역 : 5천만원 초과 - 물품 : 1.9 억원 이상 	- 지방계약법시행령 §42

추정가격의 산정요령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7조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으며 예정가격에 대하여는 법제11조와 시행령 제 9조에서 설명이 되므로 본조에서는 생략 한다.

다음은 고시금액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시행령에서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대상은 자치단체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개방이 되어 있으며 개방금액이 공사는 1,500만 SDR이상, 물품과 용역의 경우 50만 SDR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공사는 222억이상, 물품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국가의 경우에는 공사는 500만 SDR(74억원)이상,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0만SDR(1.9억원)이상으로 개방되어 있다.

본래 고시금액은 국제입찰의 대상기준을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나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광역지자체의 경우 고시금액의 미만이 해당됨),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PQ심사대상(고시금액이상)의 기준, 물품의 구매나 제조구매의 경우 최저가 입찰대상(재정기획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시금액은 매년 2년에 한번씩 2년 동안의 평균 환율을 산출하여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6. 12. 29 판보에 고시되었고 금년연말에 다시 고시가 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 - 43호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대상금액 : 공사 222억원이상, 물품·용역 3억원이상

2006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사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51조를 설명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규칙 제2조의 계약담당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먼저 동 규칙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계약담당자”라고 표현한 이유부터 살펴보자. 지방계약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민간전문기관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계약담당자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계약담당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방재정법에 있는 회계공무원의 정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1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계약법령상 공무원인 계약담당자는 경리관과 분임경리관, 대리경리관을 말한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지출원, 출납원인 공무원이나 그 보조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계약담당자의 보조자로서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의하여 회계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보면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일정부분 위임토록 하고 있다.

〈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상한) 〉

구 분	공 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조달구매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본 청	추정가격 10억원이하	추정가격 1억원이하	추정가격 5억원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금액제한 없 음	금액제한 없 음
제1관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추정가격 500만원이하	"	"

※ 지방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대리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회계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같음한다고 지방재정법 제9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회계 관직지정 현황 〉_1. 광역시도의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 담당하는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채무관리관	예산담당관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처장	관서의장, 부소장, 국장 또는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회계업무담당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관리실장			
지 출 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경리업무담당사무관	경리지출업무담당자	
수 입 금 지 출 원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세입업무담당자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지출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사무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의사업무담당사무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 주사	경리지출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주사

〈 회계 관직지정 현황 〉_2. 기초자치단체 市の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담당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부시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는 회계업무 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 국장직제가 있는 때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괄채무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 업무담당, 세외수입 업무 주관 각 담당	의정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사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사무업무담당			사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 회계 관직지정 현황 〉_3. 기초자치단체 郡의 경우

관 직 명	본 청	지 방 의 회	제 1 관 서	기 타 관 서
징 수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 업무담당 각 실과장		세입업무담당과장	
경 리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 임 경 리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군수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 괄 채 무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채 무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담당	의정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경리주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인 계약담당자는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자.

가. 변상책임

회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하며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 있어도 손실을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변상책임의 주체는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 실무보조자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공무원도 변상의 책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변상책임의 범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이나 사업부서 공무원간에 배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으로 요약되며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다. 변상책임의 유형은 단독변상과 공동변상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계약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이 공동의 변상책임을 지게 되나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상급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연대 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않거나 부당한 지시로 이행의 부당성을 보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변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대법원판례 2001. 2. 23, 99두5498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변상책임이 있다.

나. 기타의 책임

계약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받는다하여 다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병과가 가능하다. 대표적인책임이 징계책임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 형사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

다.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보조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회계사무에 준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예시 : 보상 업무담당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세출예산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분야의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 일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러한 개별법령에 내용은 지방계약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계약에 관한 개별법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과 관련된 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물품관리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소방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령, 지방공기업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산림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여항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전력기술관리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증권거래법, 인지세법, 국세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방자치법, 평택 시지원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2. 계약과 관련된 관련부처·청의 고시·지침·공고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 공고 (중기청)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국토해양부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공정위)
- 감리업무 수행지침 (국토해양부지침)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국토해양부지침)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비용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노동부고시)

먼저 지방계약법과 다르게 규정되는 개별법령을 경우를 살펴보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령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선정이나 입찰방법을 지방계약법령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정가격 1.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문화재보호법령,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 등, 개별법령에서는 당해 업종에 관한 하도급관련사항, 면허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계약법령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중 시설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를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전문업종에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건설업에 등록해야 하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건설산업 기본 법 제16조제3항)

- ① 종합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②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 ③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4항, 영 제21조 〉

- (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나)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구분 〉

건설업구분	업 종	업 무 내 용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건축공사 및 부수되는 시설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수목원, 공원조성 등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 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송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24. 난방시공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미장, 방수, 다듬기, 줄눈, 타일, 조적 들쌓기, 돌붙임, 돌포장, 석재공사 도장, 뽐칠, 차선도색, 경기장바탕 비계, 구조물해체, 파일, 말뚝 창호, 철물, 온실설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조립 철근구조물, 2차선미만도로포장 건물내 기기설비, 무대장치, 냉장 상·하수도기기설비, 옥외용수관 보링, 그라우팅, 착정공사 레일, 침목, 건물목보판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선택층 수중공사, 부표, 항로표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조경석, 인조목, 파고라, 놀이기구 철구조물 하수급, 육교, 철탑, 수문 교량, 건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 케이블카, 리프트 향만, 운하, 하천준설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설비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점검, 정비, 복구, 개량, 보수, 보강

건설공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한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업체는 2007년도 토목건축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 아니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발주공사의 경우 당해업체 시공능력 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경우 150억원은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호, 2008년 1월 15일)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